

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(안)

< '14.4.30, 연구비정산팀 >

□ 배경 및 목적
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('14.1.1)에 따라 '14년부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과세 적용
 - ※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2항 및 제42조제2호, 동법 시행규칙 제32조
-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편성 및 정산에 필요한 부가세 관련 처리 기준 마련을 통해 연구현장의 혼란 방지 및 연구개발비 관리의 정확성 제고

□ 부가세 처리 방법

- 국가연구개발비 관련 규정*에 의거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, 부가세 등은 “관세법”, “부가세법”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

- *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제12조의2(연구개발비의 사용)
- *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(연구개발비의 관리)
- *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(연구개발비의 관리)

- 부가세 적용 범위

구분	협약 당사자	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		과세 여부
정부지원 과제	정부(전문기관) - 주관기관	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주관연구기관(산단) 귀속	대가성 없음	기존과 동일 면세
정부지원 위탁과제	주관기관(협동 연구기관) - 위탁연구기관	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주관(협동)연구기관에 귀속	대가성 있음	부가세법 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 (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)에 한하여 면세

- '14년도 협약과제부터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위탁연구가 관련 세법에 의거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과세 적용

□ 위탁과제 부가세 관리 절차

구분	면세대상	과세대상
협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련 법에 근거하여 면세 적용 여부 판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세청에 제시할 면세 적용 관련 증빙자료 구비 필요 ※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부가세 면세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면세범위></p> “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·방법·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개발비에 매출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 체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비=공급가액+매출부가세 ※ 공급가액=직접비+간접비 ※ 매출부가세=공급가액×10% ※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매출부가세는 직접비의 “연구활동비” 비목에 편성 ※ 간접비는 “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”에 따라 계상하되,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상
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개발비의 실 집행액으로 정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개발비의 실 집행액으로 정산하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는 국세청의 부가세 환급시기와 관계없이 연구기간 내에 선 제외하고 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등록 시 매입에 따른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등록 •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출부가세=연구개발비(직접비+간접비)의 실 집행액×10% ※ 단,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 종료(최종) 후 정산 시 실 집행액 적용 가능 ※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금액으로 회수대상에 포함 (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, 2014.4)